

**** 예마재가복지센터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****

♣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① (계약기간)

1~5등급에 장기 요양 대상자로 계약일로부터 등급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, 계약 기간중

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해제 될 수 있다.

갱신 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.

② (계약목적)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중 장기 요양 등급을

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,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

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.

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
1.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

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(총 수가금액 × 본인부담율)을 대상자(또는 보호자)로

부터 받고,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(공단부담금)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.

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율은 [별표1,2]에 따른다.

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
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.

⑤ 대상자는 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,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

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2.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

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산정기준은 [별표 1]와 같다.

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 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[별표3]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.

단, 심야, 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.

3.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

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[별표4]에 따른다.

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

고,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를 산정한다.

4. 그 밖의 병원이용 등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, 계약의 해제]

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신원인수인의 권리

①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

②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
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, 해지 가능한 권리

2. 신원인수인의 의무

① 이용자의 건강, 병적상태 등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

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

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

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

3. 계약의 해제

①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
유선, 방문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.

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1.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
2.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
3. 이용자(보호자)의 건강진단 결과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」에
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
4.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 제공 할 수
없는 경우

5.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연체하는 경우

6.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,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

7.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